

「평창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」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3년 8월 30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: 2023년 9월 11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8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3년 9월 11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안전교통과장)

가. 제안이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평창군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목적,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2) 안전보안관 위촉(안 제3조)
- 3) 안전보안관 교육 및 임기(안 제4조)

- 4) 안전보안관 활동(안 제6조)
- 5)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(안 제7조)
- 6) 관리 및 해촉(안 제8조)
- 7) 활동 우수 안전보안관 포상(안 제9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○ 본 조례안은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의4 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
지역 내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
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,

주요내용으로는,

안전보안관을 정의하고, 임기, 위촉, 해촉 및 교육 등의 사항을 정하고,
활동 및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.

주민 참여형 안전문화활동 및 제도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
평창군 안전보안관 제도를 운영하여 관내 안전사고 예방 및
주민의 안전문화 참여 활성화를 추구하려는 것으로,

검토결과,

법령 위배 및 저촉사항 등은 없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